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8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통물류과 박영삼 과장(02-2110-5141), 김희석 사무관(5143)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퍼마켓 등 대상으로 일제점검 실시(9.2~9.1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할 계획임

○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근거하여 운용

- **(표시의무자)**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로서 매장면적 33㎡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이상)인 소매점포
- **(가격표시제 종류)**
 · 판매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표시(42개 업종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 가격의 표시(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등 83개 품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소가 표시금지(가전제품 등 275개 품목)

□ 그동안 산업부와 지자체가 명절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번 점검은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 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

○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천만원)를 취할 예정임

□ 아울러 금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홍보**도 같이 진행할 예정임

○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대규모점포에서만 시행되었던 **단위가격 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 **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 모두가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붙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

´13년 추석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

□ 목적

○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 도모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3.9.2(월) ~ 9.13(금), 2주일간 실시

○ **점검대상** :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백화점, SSM, 편의점, 골목수퍼, 전통시장, 드럭스토어, 기타 소매점

○ **점검방식**

- 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9.2~9.13)
- 일부 지자체는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와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9.5~9.10)
-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퍼마켓 등 소매점별로 현장방문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

○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

* 특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 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

○ 가격표시제 변경사항(9월이후 시행) 홍보

*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에 SSM 포함, 표시크기, 지자체별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등

□ 향후계획

○ 금번 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조치

<참고>

가격표시제 개요

▣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 판매가격표시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판매업자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 •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동일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다만,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

○ 단위가격표시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판매업자	대규모점포 (재래시장 제외)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3개 품목**	'99년 최초 도입('99 15종→'04 33종→'09 83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0㎖, 100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가능

○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해당없음	가전제품, 의류 등 275개 품목	'99년 최초 도입('99 12종→'09 279종→'11 275종)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잇는 품목 등
* 표시방법 :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됨

▣ 단위가격 표시의무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구분	가공식품(61종)	일용잡화(19종)	신선식품(3종)
총 83종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 된장(100g), 쥬스(100㎖), 소스류(100㎖), 케찹(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맛김(장)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 아이스크림류(10㎖),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상자)(10g), 잼(100g), 베이컨(100g), 소세지(100g), 냉동식품(만두)(100g), 젓갈류(10g), 액젓(10㎖), 차류(10g), 과실음료(100㎖), 청량음료(100㎖), 코코아(10g), 인스턴트 분말크림(10g), 마카로니(100g), 스파게티(100g), 버터(100g), 마가린(100g), 벌꿀(100g), 빵가루(100g), 빵(10g), 시리얼(100g), 식용기름(100㎖), 와인류(100㎖), 생선통조림(100g), 생수(100㎖), 주류(100㎖), 드레싱류(100㎖), 건어물(100g)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 칫솔(개), 치약(10g), 곽티슈(10매), 위생백(장), 가루비누(100g), 세탁비누(고체)(100g), 세탁비누(액체)(100㎖), 합성세제(액체)(100㎖)	농산물(100g), 수산물(100g), 축산물(100g),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구분	의류(247종)	가전제품(14종)	기타(14종)
총 275종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	50	200	500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20	30	100	300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자	시정권고	50	100	500	1,000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령위반자	시정권고	100	300	500	1,000

▣ 가격표시제 쉬운 이해를 위한 설명

○ 가격표시 대상 품목

- 백화점, 수퍼마켓 등 53개 소매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제조·유통·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님)가 판매하는 **모든 품목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

○ 가격표시 의무자

- 매장면적이 **33㎡ 이상**(특별시·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매장면적이 33㎡ 미만(특별시·광역시는 매장면적 17㎡ 미만) 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 다만,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이 33㎡ 미만**(특별시·광역시는 매장면적 17㎡ 미만) **소매점포는 제외**

-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지역(예;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

○ 할인판매 시 판매가격 표시 방법

- 일정기간 할인판매 후 즉시 판매가격을 환원하여 판매할 경우
 - 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할인율을 게시할 경우 개별상품별로 정상판매가격을 수정할 필요 없으며, 할인 전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할인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예: ~~10,000원~~ → 8,000원)
- 상시 할인판매(재고처리, 계절상품 등)의 경우
 - 당초 표시된 판매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때에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수정·표시함
- 00% 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는 **규정위반**임(특히 아이스크림 등)

○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 권소가 등의 **표시금지품목**(275종)은 **권소가를 표시하면 안되며,** 그 외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거나 모두 규정위반이 아님

○ 향후(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13.9월 예상) 변경사항 홍보

- 단위가격 표시의무 대상에 준대규모점포(SSM)를 추가
-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
- 각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수시점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도 도입취지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표시**하여 왔음

○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물품공급자(제조·유통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후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

○ 또한,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통해 유통과정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재판매가격 유지수단*으로 악용**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고 상대방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소매업자는 매입원가가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 결정 및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가격의 하방경직성 심화**

□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실제 판매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간의 차이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1999년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최초로 금지**하였고, 이후 **표시금지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일부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더라도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있으며

○ 소비자들은 현재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중인 **판매가격 표시제**를 통해 상품 구매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